

일본 유료 노인홈의 현황과 그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노인 복지법 개정에 츠음하여-

The condi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Japanese¹⁾ Elderly Home

-The change of the Korean geriatric security law-

신 경 주
Shin, Kyung Joo

Abstract

In Korea, the elderly support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families in the extended family system with the influence of the transmigration and the confucianism thought.

But in Korea the drastic changes of society such as, the growth of the elderly pollution, the urbanization, the decrease of the birth rate, the increase of the working women, the growth of the nuclear families, etc., make the family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elderly.

Therefore, some people insist o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as the wa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s and some of corporations including profit-organizations are ready to participate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They force the change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plans under the law.

At this point, the conditions of the elderly home i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facilitated the elderly home business were examined at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nsider the possible problems in the elderly home and to prevent from happening another elderly problem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옛부터 불교의 윤회사상과 유교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대가족제도하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족차원에서의 노인부양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더이상 가족차원에서의 노인부양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노인인구율의 증가, 도시화율의 증가, 출생율의 감소, 여성노동인구의 증가, 핵

가족화 등).

이에 일부계층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유료노인홈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이익단체가 대거 이에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 현행복지법으로는 사실상 유료노인홈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이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비교적 최근(1980년대)에 유료노인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지금

* 정회원, 한양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학술박사

1) It is a civil institution for the aged. It includes homes for the aged and nursing homes which the elderly paid for the facilities.

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유료노인홈의 현황을 소비자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유료노인홈의 문제를 확실히하며 나아가 다른 노인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 유료노인홈의 역사

소비자 측면에서 일본 유료 노인홈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유료 노인홈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후 노인 부양자인 젊은이들이 대거 전사함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1890년 시작부터 國是로 삼았던 부모에의 효도(親孝行思)를 지켜왔으므로 1945년 까지는 노인부양이 가족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패전으로 젊은층을 대거 잃게 되었으며, 또 전쟁 혼란기를 지나 한국의 6.25사변을 기점으로 공업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하여, 자식이 직장을 따라 고향을 둉지게 된다. 그러나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자식의 노인세대와의 동거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1955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사회학자가 구미(歐美)를 방문하여 가족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배우기에 전념하게 된다(1993, 加藤泰純). 그후 1961년 국민연금(國民年金)제도와 상호보조보험(皆保險)제도가 도입되며, 1963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중에서 노인복지시설로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당시 「유료노인홈」은 이 복지시설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개념도 회박한 단계로 노인복지법 29조 잡칙에서 「항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외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만 명시되어 있다.

위와같은 노인복지법속에서 1965년 「라이프케어」란 명칭의 중소기업은행이 건설한 맨션이 생겼으며, 이것을 일본 최초의 유료노인홈으로 들수있다. 이는 종신보증이란 일종의 개인구입 방식인데, 당시 일반인의 부동산은 항상 체값을 지니는 재산이란 사고방식에 의해 「온천부속맨션」으로 명칭을 바꾸어 일본사회에 봄을 일으켰으며, 케어(신체보조)를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위해 별도 회사로서 「라이프케어」를 발족시켜 신체보조전문회사가 설립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일본의 유료노인홈의 수를 개원연대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 2곳, 1960년대 4곳에 불과하다가(당시는 노인복지 시설위주단계였음), 1970년대에 24곳이 건립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1974년 유료노인홈 지도요항이 발표되고, 이는 국민의 신뢰가 커지는 계기가 된다. 그후 1980년대는 82곳이나 증가하고, 1990년 29곳이 입주완료 6곳이 입주미완료 상태로 합계 147곳의 유료노인홈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급격하게 1980년대부터 유료노인홈이 증가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1985년이 국민연금 시작 30년이 되는 해로 일본노인이 돈을 가진 부자로 변신하게 되며, 그외 지금까지의 저축과 땅값상승으로 노인은 더욱 재산가가 된다(현재 일본 부의 80% 이상을 노인이 소유). 또 자녀 측면에서 가족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녀로부터 신체보조를 받기어렵게 되고, 노인측은 노인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의사로 끝마음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게된다. 이에 국가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1실에 복수

인이 거주하는 방식이 강제되고 있어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노인층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유료노인홈을 선호하게 된다. 그외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직장진출증가도 노인신체보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료노인 홈의 증가에 일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료노인홈의 증가가 새로운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즉 1981년 향양회(向陽會)복지센터라는 회사가 125실 규모로 종신이용권형 유료노인홈 「向陽會 산메티크」를 개원(건설비 18억엔, 약 140억 원)하여,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중 28실만 입주되어 건설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회사가 도산하자 의사와 직원이 퇴직하고, 입주자는 입주금을 반환받을수 없게되어 자취 생활에 돌아가게 된 예이다. 그외에도 「有馬의 하나노보」 「아쿠티버」 「西宮 월드캐스워커」 등 의 도산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주목을 끌게 된다(シェリスト 949호). 이 사건들 이후 일본에서는 1992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노인복지법 을 적용하여 유료노인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게 되며, 유료노인홈협회를 제도상 정착 시켜 자체 강화를 꾀하게 하였다.

2. 유료노인홈의 위치

일본에서의 노인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① 양호(養護)노인홈
- ② 특별양호노인홈
- ③ 경비(輕費)노인홈-A형, B형, Care House
로 구분됨
- ④ 유료노인홈

이중 ①②③은 일본의 노인복지법상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여러가지 공공 혜택과 함께 행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유료노인홈은 ④번에 해당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외의 민간 시설에 해당한다. 그외에 공영(公營)시설로 노인보건시설, 디케어 센터(The care center), 쇼토스티 -(Short stay)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1993, 前田敬子, 丸山英氣).

유료노인홈의 운영주체, 비용부담자등의 상세는 표1에 제시한다.

표1. 유료노인홈의 대략

운영주체	비용	입주수속	설비	서어 비스 내용	입주 연령	목적	종류
'주식회사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그외'	전액 입주 노인 부담	각 유료 노인홈에 직접 신청	홈에 따라 다름	홈에 따라 다름	대부분 60세 이상	일상생 활상의 서어비 스를 제공하 는 민 간의 시설	일반형(긴 강자 생활보조 형(비건강자) 혼용형 (건강자, 비건강자)

먼저 유료노인홈과 노인복지시설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주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방공공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한정된데 비해 유료노인홈은 주식회사나 재단법인등까지 확대되어있다. *비용부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수입에 준한 부담혹은 무료인데 비해 유료노인홈은 전액을 입주노인이 부담한다. *입주수속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일단 신청후 심사를 거쳐 조건해당자만(각각 조건이 다름) 가능하며, 유료노인홈은 입주금과 생활비및 식비의 정기적인 부담가능자에 한해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연령에서는 특별히 양자간에 차이는 없으나 유료노인홈의 경우 그 폭이 더 넓다. *설비에서는 유료노인홈쪽이 훨씬 좋은

편이다. *서서비스 내용에서는 유료노인홈의 경우는 서비스에 대해 따로 입주노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상세는 다음 논문에 계속).

3. 유료노인홈의 분류

유료노인홈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분류가 가능하나, 소비자(입주희망노인)측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②신체보조(介護)정도측면과 계약형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보조정도에 따른 분류(1993년 일본 후생성 유료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지침에 표시된 유료노인홈의 유형에 해당함).

① 종신이용형(동일 유료노인홈내 신체보조 단계 가능)

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유형으로 입주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노인만이 입주 할 수 있다. 입주후 신체보조가 필요해 지면 보조도 해 준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특별 신체보조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개설에서는 신체보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조비용은 내용에 따라 본인이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종신이용형(제휴시설로 옮겨 신체보조가 가능한 형)

일단 입주시는 건강한 노인이 입주해야하며, 입주후 신체보조가 필요해 지면 그곳을 떠나 제휴시설로 옮겨서 신체보조를 하는 형이다.

2) 일본에서 介護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본 논문에서는 신체보조로 설명함.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용어에서는 介護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한글로 표현할 때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법률에서는 신체 및 생활비 보조를 포함함.

제휴시설에 옮겨있는 동안도 본인의 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온다.

③ 제휴시설 이행형

일단 입주시는 건강한 노인이 입주한다. 입주후 신체보조가 필요해지면 제휴시설로 옮겨지는데 이 시점에서 개설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나 대신 제휴시설에의 입주금은 따로 필요 없다.

④ 한정 신체보조형

입주 계약시 포함된 신체보조만 행하며, 그 이상의 보조가 필요해지면 해약한다. 해약후 신체가 부자유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거처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형태이다.

⑤ 건강자형

신체보조가 필요해지면 계약을 해약하고 퇴거하는 것이 조건이다. 요즈음은 이런 형은 거의 일본에서는 설립하지 않는 형이나 현재 노인홈의 약 7%가 이 유형에 속하며 1000여명이 입주하고 있다(입주자의 약 6% 차지). 따라서 빈곳이 있는 상태다.

⑥ 신체보조 전용형

입주시부터 신체보조가 필요한 사람만이 입주하며, 대부분의 흠이 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대신 리파빌리테이션, 특수 욕실등을 가지며, 진료시설등과도 연대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신체보조 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징수 되고 있다.

2) 계약 형태에 따른 분류

① 종신 이용권형

입주시 거액의 입주금을 지불해야하며, 이외에 또 매달의 관리비와 식비를 지불하는 형식이다(즉 개설과 공동설비의 종신 이용권을 입주금으로 사는 형). 이 경우는 입주자가 사망

하거나 퇴거하게 되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 타인에게의 양보는 불가능하다.

이곳의 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전국평균 입주금이 1인일 경우 2300만엔(한화 1억 8천만원), 2인 입주시 3000만엔(한화 약 2억3천만원)이다. 이외 매달 지불해야하는 관리비와 식비가 1인일 경우 12만 5천엔(한화 약 96만원), 2인 입주시 21만 1천엔(한화 약 162만원)이다. 이는 전국의 평균 가격으로 등경시내의 경우는 이 금액의 2배 정도가 일반적이다.

②임대형

개설과 공동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입주시 지불하지 않고, 매달 관리비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형식이다. 이 형태는 현재 간이 보험복지사업단, 후생연금사업진흥단에서 경영하는 노인홈 정도에 불과하며 숫자적으로 극히 적다.

③분양형

노인홈의 개설 소유권을 입주자가 갖는 형이다. 그러므로 개설 구입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입주금이 없다. 그외에 매월 관리비와 식비를 흠에 지불하고 서어비스를 받게 된다. 흠을 퇴거해도 개설은 개인재산이므로 현시가로 타인에 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흠에 따라서는 반듯이 구입 회사에 되팔도록 명시된 경우도 있다.

3) 그외의 분류

노인홈의 사업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로 구분되며, 최근 가장 많은 형은 금융이나 의료, 부동산, 건설회사등이 함께 합병하여 각각 관련부분을 담당하는 주식회사형이 가장 많다(노인홈의 약 68%차지). 종교법인의 경우는 다양한

종교가 참여하고 있으나(그 비율은 약 6%선),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종교자가 입주 가능하다.

노인홈의 입지 조건 측면에서는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지형(休養地型), 전원형으로 구분된다. 전원형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입주자의 생활이 그속에 한정되는 단점이 있으며, 도시형은 교통이나 의료기관등에의 이용이 편한 대신 공간이 좁고 가격이 비싼 단점에 있다(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은 의료비의 30%부담, 70세 이상은 완전 무료이므로 병원 이용률이 높다).

4. 유료노인홈에서 대용 가능한 신체보조 정도

특별한 신체보조를 하지 않는 유료노인홈이 약 4%로 건강자형이 여기에 속한다.

식사보조, 입욕보조, 가사 서어비스등의 일상생활원조 정도만 대용 가능한 노인홈이 약 20%이다.

배설보조, 특별입욕등 꽤 특별한 신체보조까지 대용 가능한 노인홈은 약 6%이다.

와상노인에 가까운 상태까지 대용 가능한 노인홈이 약 13%이다.

사망후의 뒷처리까지(장례식은 해주나 묘지구입은 본인부담), 대용 가능한 노인홈이 약 57%이다.

즉 노인홈에 입주하는 노인의 약 60%는 죽을때까지 있을 각오로 들어갈 수 있게 시

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있으며, 그외에는 스스로 움직일수 있는 상태를 생각하고 입주하는 단계인 것을 알수있다(출처:국민생활센터 유료노인홈의 실정과 비교Ⅱ, 1993).

5. 개실수 및 지역별 유료노인홈의 분포

개실수별 유료노인홈의 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한다.

표 2. 유료노인홈의 거주실 분포

설수 지역	49실 미만	50-100 설비만	100- 150실 미만	150- 200실 미만	200- 250실 미만	250- 300실 미만	300- 350실 마만	350실 이상	計
北海道	0	6	1	0	0	0	0	0	24(8)
東北	1	1	0	0	0	0	0	0	2(1.4)
關東	28	21	14	3	2	3	1	3	75(51.0)
中部	6	4	8	3	1	5	1	1	29(19.7)
關西	4	8	2	3	1	2	0	1	21(14.2)
西國	3	0	1	0	0	0	0	0	4(2.7)
九州	2	4	3	0	0	0	0	0	9(6.1)
計	44 (23.9)	44 (23.9)	29 (19.7)	9 (6.1)	4 (2.7)	10 (14.7)	2 (1.3)	5 (3.5)	147 (100)

이를 살펴보면 100실 미만의 소규모가 약 60%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100~150실 미만의 중규모가 약 20%로 약 80%가 중소규모임을 알수 있다. 300실 이상의 대규모는 약 5%수준미만에 그쳐 극히 저조하다.

지역에 있어서는 전체 유료노인홈의 약 51%가 동경을 포함하는 관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부지역 약 20%, 대관을 포함하는 관서지방이 약 14%로 전체 유료노인홈의 약 72%를 점하고 있어 위치에 있어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실수요를 찾았기 때문으로 볼수 있으며, 또 생활상 편리한 곳을 찾았다고도 볼수있다.

6. 유료노인홈의 문제해결 노력

① 1990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정부측면에서의 유료노인홈의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유료노인홈 설립시 사후통보형식에서 사전신청형식으로 변화시켜 설치단계에서 행정지도를 행한다(29조 1항).

*각 지역의 행정의장(도지사등)은 지금까지는 권고만 할수 있던것을 개선명령을 할수 있게 한다(29조 4항).

*유료노인홈협회를 제도상 정착시켜 업계에서 자주노력의 기점화한다(30조 1항).

② 일본후생성(1986년, 1988년, 1990년 개정)이 행정지도의 新 Guide Lined을 발표하여 그속에서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변경시켰는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지침은 유료노인홈으로서의 최저기준으로써의 성격을 강화시켜 *30년의 장기사업수지계획의 책정, 상당수의 입주희망자가 모집된 후 착공할것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운영을 도모하고, *유료노인홈의 유형을 분류표시하며, 신체보조서비스의 장소와 내용, 빈도, 비용부담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의 선택편의를 도모하며, *입주금선금을 20%내외로 하며, 입주후의 해약시 신청금과 위약금이외는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속에 입주자기금설립으로 만일 유로노인홈이 도산할 경우 입주자가 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금전면의 보증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입주자가 유료노인홈 입주시 부담하고있는 보증액이 500만엔(한화 3850만원)에 불과하여 입주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③ 이외에는 후생성 사회국내에 1985년 Silver Service 진흥지도실을 설치하여 유료노인홈을 이 관할에 두고 이속에 사단법인 Silver Service 진흥회를 두어 건설, 부동산,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복지단체등 민간대기업의 200여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④ 고령화 사회를 좋게하는 여성의 모임은 1986년 3월 유료노인홈 연구회를 결성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한 책을 출판하는 등 활약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모임이 유료노인홈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활약하고 있다.

⑤ 유료노인홈 거주노인들이 자치모임을 결성하여 여기에 사회학자 등을 참여시켜 유료노인홈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⑥ 국민생활센터에서는 유료노인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⑦ 유료노인홈내에 자치기구를 결성하여 입주자와 경영자 및 일반인 대표가 함께 참여케 한다.

7. 한국 노인복지법 개정시 유료노인홈에 대한 제언

① 유료노인홈의 입주권은 노인으로서는 최후의 선택임과 동시에 최고가의 마지막 선택임을 명심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장치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일본의 개정된 유료노인홈의 지도지침의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③ 일본 유료노인홈의 가격을 참고로 한국 유료노인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한국 노인은 부자가 적다).

* 유료노인홈의 입주금과 매월 분담금 속에 포함된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 유료노인홈 입주금 산정방식을 공식화하여 대기업의 폭리를 막아야 한다(건축비의 1/5을 입주자 총수가 부담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함).

④ 유료노인홈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구분되어야 한다.

⑤ 유료노인홈이 대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사회복지법이 이를 막아야 한다.

⑥ 유료노인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加藤泰純, 日本の有料老人ホームの現状と展望, 1993
2. _____, シルバー事業としての住居, 1989 建築講報 2月
3. 全國有料老人ホーム協会, 論 NEWS, 1993
4. 全國有料老人ホーム協会, 有料老人ホーム入居カハド, 1993
5. 前田敬子, 丸山英氣著, 有料老人ホーム, 有斐閣, 1993
6. 國民生活センター, 有料老人ホームの實情と比較II, 1991
7. 金延史, 有料老人ホームについての行政的關係, ジョリスト NO 949
8. 神田各二, 有料老人ホームについての行政的課題, ジョリスト NO 949
9. 有料老人ホーム協会, 標準有料老人ホーム入居契約書.

10. 佐藤進, 老人福祉서비스와 民間部門의 役割, 老人福祉政策開發을 위한 國際學術 세미나 요지집(I), 1993. 5. 6
11. E.Baxter Webb, 國제 노인산업의 전망, 老人 福祉施設政策開發을 위한 國際學術세미나 요지집 (II), 1993. 5. 7
12. 박재간, 미래사회의 노후생활과 실버산업, 노인문제 국제학술세미나요지집, 1992.6
13. 佐藤進, 미래사회의 고령자부양과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문제 국제학술세미나요지집, 1992.6
14. 久野方郎著, 最新有料老人ホームの事情, 同友館, 1989
15. 國民生活センター, 微底比較全國有料老人ホームの 實情, 1988